

순천대학교 대학발전위원회규정

제정 2007. 1. 4. 개정 2007. 6. 26.
개정 2008. 7. 31. 개정 2009. 4. 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교가 대학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대학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09. 4. 3)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한다.

1. 대학발전 전략방향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
2. 대학 재정확보 추진에 관한 사항
3. 대학 후원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
4. 기타 대학발전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 또는 총장이 임명하는 자가 되고, 부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. (개정 2007. 6. 26, 2009. 4. 3)

③위원은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본 대학교 교직원 및 사회적 명성을 지닌 외부인사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 (개정 2008. 7. 31)

④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. (개정 2008. 7. 31)

제4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6조(간사) ①위원회의 회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둔다.

②간사는 기획평가과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07. 6. 26.)

제7조(예우) 본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절한 예우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8조(운영세칙) 이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(2007. 1. 4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7. 6. 26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8. 7. 31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9. 4. 3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